

# 평생교육정책연구소 규정(4-2-8)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지) 이 연구소는 건양대학교 평생교육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며, 건양대학교 내에 둔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평생교육 정책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평생교육의 올바른 방향 제시 및 정책 활용 방안 연구 및 개발 하여, 지역사회에 권위 있고 전문성을 갖춘 대전·충남 최고의 민간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에 봉사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우수 프로그램 연구 개발
2. 지자체 사업을 위한 전문적인 자료 수집
3. 지역사회 공적 인프라 구축(DB)
4. 정부·지자체 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 분야 연구 및 추진
5. 교내 평생교육대학 운영을 통한 교육사업 운영
6. 각종 행사(평생교육 연구모임 및 협의회, 평생교육 세미나 등)
7. 평생교육 인적자원개발 사업(사회적 기업인 육성)
8. 기타 연구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 2 장 조직 및 임원

제4조(조직) 연구소에는 연구기획팀, 교육사업팀, 사무팀을 둘 수 있다.

- ① 연구기획팀은 관련 정책 및 연구, 사업기획 등을 담당한다.
- ② 교육사업팀은 본교 평생교육관련 사업 진행 및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 ③ 사무팀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연구행정, 사무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임원 및 임기) ① 연구소에 소장 1인과 각 팀에는 연구원 또는 위촉 연구원을 둔다.

- ② 소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직무는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 3 장 연구원

- 제6조(연구원) ① 연구소에는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위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 ② 연구위원, 연구원은 국내외 해당분야의 전공자 및 적격자를 평생교육원장 및 연구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 ③ 객원연구원은 국내외 해당분야의 전공자를 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 ④ 보조연구원은 연구소의 사업에 참여하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소장이 임명한다.

## 제 4 장 운영위원회

- 제7조(구성 및 회의)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교원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평생교육원장, 연구소장이 위촉한 자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 5 장 재 정

제8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학교 지원, 산업체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비, 사업수익금, 기타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 부 칙

1. (운영세칙) 기타 본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